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39
----------	------

제출일자 : 2022.

제출자 : 달성군



1. 제안이유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공약 사업 등 군정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

2.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사항

- 국 단위 개정사항 : 안 제3조, 안 제7조, 안 제9조
 - 명칭변경 : 주민복지국 → 교육복지국, 정책관광국 → 문화관광국
- 과 단위 개정사항 :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6조 ~ 제9조
 - 정책추진단 : 신설(정책사업, S자형관광벨트, 청년혁신, 전략시설)
 - 교 통 과 : 국이동(교육복지국 → 경제환경국)
 - 교육청소년과 : 국이동(문화관광국 → 교육복지국), 변경(교육정책과)
 - 안전방재과 : 변경(안전총괄과)
 - 도 시 과 : 변경(도시계획과)
 - 정책사업과 : 폐지
 - 문화체육과 : 변경(문화예술과)
 - 체육진흥과 : 신설(체육진흥,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 공원녹지과 : 국이동(경제환경국 → 문화관광국)
- 팀 단위 개정사항 : 안 제4 ~ 9조
 - 기획예산실 : 변경(군정홍보 → 홍보)

- 자치행정과 : 부서이동(민방위 → 안전총괄과 이관)
- 일자리경제과 : 변경(경제노동 → 지역경제, 청정에너지 → 에너지 관리, 지역공동체 → 사회적경제)
- 청소위생과 : 신설(재활용), 변경(자원순환 → 폐기물관리)
- 교육정책과 : 변경(교육정책 → 교육기획)
- 복지정책과 : 변경 및 부서이동(보육시설 → 보육, 교육정책과 이관)
- 안전총괄과 : 통폐합(안전기획+사회재난 → 안전관리)
- 도시정비과 : 변경(전기 → 전기시설)
- 건축과 : 신설(건축물관리)
- 문화예술과 : 부서이동(체육진흥 → 체육진흥과), 변경(문화체육시설 → 문화시설)
- 체육진흥과 : 신설(공공·생활체육시설)
- 관광과 : 변경(관광마케팅 → 관광콘텐츠), 신설(관광시설), 부서이동(문화재 → 문화예술과)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지방자치법」 제125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1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8. 22. ~ 9. 11.

나. 예고결과 : 2022. 9. 8 ~ 11. 기간 중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접수(7건)

- 의견내용 : 안 제7조 관련 교육복지국 명칭 및 부서순서 변경, 부서 및 팀신설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국장 및 실·과·소장 등의 직급 등)”을“(국장 및 실·단·과·소장 등의 직급 등)”으로 하고, 제목 외 부분 중 “실장, 과장,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을“실장, 단장, 과장, 직속기관의 소장 및 과장”으로 한다.

제3조(국의 설치) 중“주민복지국”을“교육복지국”으로 하고,“정책관광국”을“문화관광국”으로 한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보조기관의 설치)제1항 중 “기획예산실·법무감사실”을 “기획예산실·법무감사실·정책추진단”으로 하고, 제2항 중 “기획·군정홍보·예산·지역인구정책·혁신평가서울사무소”를 “기획·예산·홍보·혁신평가”로 하며, 제4항을 “정책추진단장은 정책사업·S자형관광벨트·청년혁신·전략시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로 신설한다.

제5조(자치행정국)제2항제1호 중 “총무·인사교육·자치행정·직원복지·민방위”를 “총무·인사교육·자치행정·직원복지”하고, 제5호 중 “민원·공장농지민원·건축허가·건축신고·도시건설민원에 관한 사항”을 “민원·공장농지·건축허가·도시건설등 민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7호를 제6호로 변경한다.

제6조(경제환경국)제1항 중 “일자리경제과·환경과·농업정책과·청소위생과·공원녹지과”를 “일자리경제과·교통과·환경과·농업정책과·청소위생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경제노정·청정에너지·기업지원·일자리창출·지역공동체”를

“지역경제·에너지관리·기업지원·일자리창출·사회적경제”로 하고, 제2호 중 “환경관리·대기·수질·수자원”을 “교통행정·교통지도·교통시설·차량관리·차량등록·교통특사경”으로 한다. 같은 항 제3호 중 “농정기획·축산·가축방역·친환경농업·농산유통”을 “환경관리·대기·수질·수자원”으로 하고, 제4호 중 “청소행정·자원순환·위생행정·위생지도·식품안전”을 “농정기획·축산·가축방역·친환경농업·농산유통”으로 하며, 제5호 중 “녹지·정원·산림조성·산림보호·공원개발·공원관리”를 “청소행정·재활용·폐기물관리·위생행정·위생지도·식품안전”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주민복지국)”을 “(교육복지국)”으로 하고, 제1항 중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희망지원과 교통과”를 “교육복지국에 교육정책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희망지원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교육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호 중 “복지기획·노인복지·여성가족보육시설”을 “교육기획·보육·평생교육·청소년”으로 하고, 제2호 중 “기초생활보장·복지조사·복지관리·주거의료복지”를 “복지기획·노인복지·여성가족”으로 한다. 같은 항 제3호 중 “복지나눔·복지연계·장애인복지·드림스타트·아동보호”를 “기초생활보장·복지조사·복지관리·주거의료복지”로 하고, 제4호를 “복지나눔·복지연계·장애인복지·드림스타트·아동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하며, 제7호는 삭제한다.

제8조(건설도시국) 제1항 중 “안전방재과·도시과”를 “안전총괄과·도시계획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안전기획·중대재해예방·사회재난·자연재난·하천시설·하천관리”를 “안전관리·중대재해예방·민방위·자연재난·하천시설·하천관리”로 하고, 제4호 중 “전기”를 “전기시설”로 하며, 제7호 중 “건축행정·주택·공동주택관리·공공시설”을 “건축행정·주택·공동주택관리·공공시설·건축물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5호로 변경하며, 제8호를 제6호로 변경한다.

제9조의 제목 “(정책관광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하고, 제1항 중 “정책관광국에 정책사업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교육청소년과로”를 “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공원녹지과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제1호 중 “정책사업·공공사업·공공개발·민자개발”을

“문화예술·문화시설·문화재”로 하며, 제2호를 “체육진흥·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한다.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예술·체육진흥·문화체육시설”을 “관광정책·관광콘텐츠·관광개발·관광시설”로 하고, 제4호 중 “관광정책·관광마케팅·관광개발·문화재”를 “녹지·정원·산림조성·산림보호·공원개발·공원관리”로 하며, 제5호는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국장”을 “교육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책관광국장”을 “5개 국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교육복지국장”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민복지국장 및 정책관광국장”을 “교육복지국장 및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교육복지국장”으로 한다.

- ⑦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정책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 ⑧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정책사업과장”을 “정책추진단장”으로 하고,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 ⑨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2호 중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 ⑩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안전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 ⑪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3항제1호 중
“정책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하며, “문화체육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 ⑫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정책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문화체육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하며, 제17조제1항제1호 중 “정책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국장 및 실·과·소장 등의 직급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본청의 국장 및 <u>실장, 과장,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 소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u>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국장 및 실·단·과·소장 등의 직급 등) ----- ----- <u>실장, 단장, 과장, 직속기관의 소장 및 과장,</u> ----- -----.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경제환경국· <u>주민복지국</u> ·건설도시국· <u>정책관광국</u> 을 둔다.	제3조(국의 설치) ----- ----- <u>·교육복지국</u> ·----- <u>·문화관광국</u> 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보조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u>기획예산실·법무감사실</u> 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보조기관의 설치) ① ----- <u>기획예산실·법무감사실·정책추진단</u> -----.
② 기획예산실장은 <u>기획·군정홍보·예산·지역인구정책·혁신평가·서울사무소</u> 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 ----- <u>기획·예산·홍보·혁신평가</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신설)	④ <u>정책추진단장은 정책사업·S자형관광벨트·청년혁신·전략시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u>
제5조(자치행정국) ① (생략)	제5조(자치행정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u>총무·인사교육·자치행정·직원복지·민방위</u> 에 관한 사항	1. <u>총무·인사교육·자치행정·직원복지</u>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5. <u>민원·공장농지민원·건축허가·건축신고·도시건설민원</u> 에 관한 사항	5. <u>민원·공장농지·건축허가·도시건설 등 민원</u> 에 관한 사항
7. <u>정보통계·기록물·전산·통신·통합관계</u> 에 관한 사항	6. ----- -----

현행	개정안
제6조(경제환경국) ① <u>경제환경국에 일자리경제과·환경과·농업정책과·청소위생과·공원녹지과를 둔다.</u> ② (생략) 1. <u>경제노동·청정에너지·기업지원·일자리창출·지역공동체</u> 에 관한 사항 2. <u>환경관리·대기·수질·수자원</u> 에 관한 사항 3. <u>농정기획·축산·가축방역·친환경농업·농산유통</u> 에 관한 사항 4. <u>청소행정·자원순환·위생행정·위생지도·식품안전</u> 에 관한 사항 5. <u>녹지·정원·산림조성·산림보호·공원개발·공원관리</u> 에 관한 사항	제6조(경제환경국) ① ----- - <u>일자리경제과·교통과·환경과·농업정책과·청소위생과</u> -----. ② (현행과 같음) 1. <u>지역경제·에너지관리·기업지원·일자리창출·사회적경제</u> ----- 2. <u>교통행정·교통지도·교통시설·차량관리·차량등록·교통특사경</u> ----- 3. <u>환경관리·대기·수질·수자원</u> ----- -- 4. <u>농정기획·축산·가축방역·친환경농업·농산유통</u> ----- 5. <u>청소행정·재활용·폐기물관리·위생행정·위생지도·식품안전</u> -----
제7조(<u>주민복지국</u>) ① <u>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희망지원과·교통과를 둔다.</u> ② <u>주민복지국장</u>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u>복지기획·노인복지·여성가족·보육시설</u> 에 관한 사항 2. <u>기초생활보장·복지조사·복지관리·주거의료복지</u> 에 관한 사항 3. <u>복지나눔·복지연계·장애인복지·드림스타트·아동보호</u> 에 관한 사항 4. (신설) 7. <u>교통행정·교통지도·교통시설·차량관리·차량등록·교통특사경</u> 에 관한 사항	제7조(<u>교육복지국</u>) ① <u>교육복지국에 교육정책과·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희망지원과</u> -----. ② <u>교육복지국장</u> ----- -----. 1. <u>교육기획·보육·평생교육·청소년</u> ----- ----- 2. <u>복지기획·노인복지·여성가족</u> ----- 3. <u>기초생활보장·복지조사·복지관리·주거의료복지</u> ----- 4. <u>복지나눔·복지연계·장애인복지·드림스타트·아동보호</u> 에 관한 사항 7. (삭제)

현행	개정안
제8조(건설도시국) 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u>안전방재과</u>·<u>도시과</u>·도시정비과·건축과·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생략) 1. (생략) 2. <u>안전기획·중대재해예방·사회재난·자연재난·하천시설·하천관리</u>에 관한 사항 3. (생략) 4. 가로정비·하수시설·농업시설·<u>전기</u>에 관한 사항 7. <u>건축행정·주택·공동주택관리·공공시설</u> 8. 토지관리·지적·지적재조사·지가정보·주소정보에 관한 사항	제8조(건설도시국) ① ----- -----<u>안전총괄과·도시계획과</u>-----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안전관리·중대재해예방·민방위·자연재난·하천시설·하천관리</u>----- 3. (현행과 같음) 4. -----<u>전기시설</u>----- 5. <u>건축행정·주택·공동주택관리·공공시설·건축물관리</u>에 관한 사항 6. ----- -----
제9조(정책관광국) ① <u>정책관광국에 정책사업과·문화체육과·관광과·교육청소년과</u>로 둔다. ② <u>정책관광국장</u>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u>정책사업·공공사업·공공개발·민자개발</u>에 관한 사항 2. (신설) 3. <u>문화예술·체육진흥·문화체육시설</u>에 관한 사항 4. <u>관광정책·관광마케팅·관광개발·문화재</u>에 관한 사항 5. <u>교육정책·평생교육·청소년</u>에 관한 사항	제9조(문화관광국) ① <u>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체육진흥과·관광과·공원녹지과</u>를 -----. ② <u>문화관광국장</u>----- -----. 1. <u>문화예술·문화시설·문화재</u>----- --- 2. <u>체육진흥·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u>에 관한 사항 3. <u>관광정책·관광콘텐츠·관광개발·관광시설</u>----- 4. <u>녹지·정원·산림조성·산림보호·공원개발·공원관리</u>----- 5. (삭제)

【별 표】

읍 · 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치행정과	1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의 계획 및 허가 나. 당직명령 다. 출장승인 라. 겸직근무 마. 병 가 바. 공 가 사. 특별휴가 아. 겸직허가	• 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9조 • 같은 조례 제7조 • 같은 조례 제8조 • 같은 조례 제9조 • 같은 조례 제21조 • 같은 조례 제22조 • 같은 조례 제23조 • 같은 조례 제27조
	2	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의 권한 가. 대부대상자 추천 나. 자금의 회수 다. 사업지도 감독	• 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
	3	읍면개발자문위원 위촉	• 군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제4조
징 수 과	1	지방세징수법중 다음의 권한 가. 지방세 납세증명서 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 지방세징수법 제5조 • 같은법시행령 제6조
	2	지방세법중 다음의 권한 가. 이륜차 등록에 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접수 및 고지서 발급	• 지방세법 제20조 • 지방세법 제30조
회 계 과	1	물품관리조례중 다음사항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처분	• 군물품관리조례 제16조, 같은조례시행규칙 제6조 • 같은조례 제17조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교 통 과	1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폐지신고 나. 기타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사항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내지 제5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9조 내지 110조
	2	노상방치 차량에 대한 다음의 사항 가. 노상방치차량 조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환 경 과	1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가.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청소위생과	1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가. 환경미화원 관리 나. 생활쓰레기 적정배출 지도 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라. 생활쓰레기 불법 투방기 지도·단속 마.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지도·단속 바. 청소장비 관리 사.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 아. 대형폐기물 처리 자. 생활쓰레기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차. 공중용 쓰레기용기 유지 관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2	쓰레기 봉투의 공급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쓰레기봉투 무상공급 나. 쓰레기봉투 판매 다.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지정 및 취소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복지정책과	1	기초연금법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나. 수급권자의 현황관리 다. 미지급 연금의 청구 라. 수급권 자격관리 마. 이의신청 등	•기초연금법제10조 같은법시행규칙제6조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 •같은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같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1조 •같은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매장·화장·개장의 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2조

소관부서	인 원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생활보장과	1	의료급여법중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책정·상실·변경 요구 나.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다. 의료급여증의 자격확인·정정· 증회수등 라. 의료급여연장승인신청서 수합 제출 마.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상한금 신청서 수합제출	•의료급여법 제3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의료급여법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3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2~3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 다음의 권한 가. 수급자의 관리 나. 급여의 신청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발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같은법 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나. 유류금품의 처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2
희망지원과	1	장애인복지법중 다음의 권한 가. 장애인 등록신청·장애진단 나. 장애인 증명서 발급 다.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라. 장애수당등의 지급 신청 마. 장애인 복지카드의 교부 등 바. 장애등급의 조정 사. 장애상태의 확인 아. 등록증의 반환명령 자.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발급 등 차.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카. 장애인 보장구 신청서 수합 및 실태 조사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8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장애인복지법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같은법시행규칙제28조 •같은법시행규칙제46조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건 설 과	1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는 제외한다) 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공사, 굴착, 건축수반 허가 제외)	•도로법 제61조 및 제66조
안전총괄과	1	소하천의 점·사용허가 및 부과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나.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14조, 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7조
도시계획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권한 가. 불법형질변경 등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및 보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토지정보과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제6조의3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공원녹지과	1	산림보호법 중 다음의 권한 가. 입산허가 나. 불놓기 허가 다.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보호법 제15조 •산림보호법 제34조 •산림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제37조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사무 가.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에 관한 무허가 행위 조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시·군·구의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